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0-434호

2020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과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 생활 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 6가구

3. 신청기간 : 2020. 3. 23. ~ 3. 27.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가.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나.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동의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7. 지원내용 :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 출입문 폭 확장, 시각 경보기 설치, 문턱 제거, 욕조 높이 조정 등

나. 지원대상 주택 내부 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다.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청소)은 고령자에 한하여 시행 가능

8. 대상자 제외기준

가.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5%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및 임차급여를 지원 받은 자

나. 기타 유사한 주거 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단,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다.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

라.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의 경우에도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나.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범죄 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10. 대상자 선정 통보 : 2020년 4월한 (별도 통보)

11.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행 : 2020년 6월 ~ 10월중 (별도 통보)

12.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 : 중구청 복지과 ☎ 760-7524

*** 주택 현황 및 장애인 등급 등에 따라 외부 화장실 내부 이전, 마당 포장공사 등 가능**